



제59회 발명의 날 유공 포상 신청(추천) 안내

오는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발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발명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A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I. 포상 안내

1. 개요

-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발명분위기 확산
-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 고취를 통한 발명의 생활화 구현
- 우수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포상 시기 :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 2024년 5월 22일(수) 예정(변동 가능성 있음)

2. 포상 분야 및 종류(규모)

- 분야 : <발명의 날 유공 포상 분야> - 80인(단체 포함)
발명가(개인, 학생, 직무),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

<참고> <올해의 발명왕 분야> - 1인 ※ 상금(3,000만원), 부상품(발명왕 트로피) 등
※ <발명의 날 유공 포상 분야>와 <올해의 발명왕 분야>에 중복 신청 가능
※ <올해의 발명왕 분야>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 확인

-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 규모 : 80개 내외

'24년 포상(안)

산업훈장 및 포장						표창									합 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지재위원장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특허청장	진흥회장		
1	2	2	1	1	4	9	9	5	3	19	4	14	6	80	

* 올해의 발명왕 1명 별도 시상

3. 자격 요건

포상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수공 연수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 발명진흥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로서, 포상별로 규정한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
- ※ 상기 공적기간 적용 예외대상 : 법률에서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

II. 발명유공자 포상

1. 분야별 신청대상 및 주요 평가기준

분 야	세부내역	주요 평가기준
공통 지표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발명가 (법인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직무발명가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자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국내·외 발명대회 입상실적이 우수한 자 - 발명을 통한 신기술 확보 및 발명진흥활동이 우수한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p>※ 대학원생의 경우 발명가(개인) 분야에 신청</p>
올해의 발명왕	○개인 / 직무	-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발명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귀감이 되는 자
발명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 또는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창출기반조성에 많이 기여한 자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및 국내·외 판매·수출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국내·외 발명대회 출품 장려를 통해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자 -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발명 장려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자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자 - 특허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자 - 특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발명장려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 종사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진흥 및 특허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식재산권 제도발전 및 개선에 기여한 자 - 발명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거나 산업·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분 야	세부내역	주요 평가기준
발명교육 유공자	○ 발명교실 및 발명반 교사 ○ 기타	- 발명인재 양성 및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발명반 및 발명교실 운영, 발명관련 행사추진실적, 발명반 및 발명교실 교육실적, 학생발명행사 수상자 배출실적, 발명 강연 및 연구 실적 등) -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 실적
	○ 교수	- 발명인재 양성 및 발명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발명동아리 운영, 발명관련 행사 추진실적, 발명동아리 교육실적, 학생발명행사 수상자 배출실적, 지재권강연 및 연구실적 등) -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 실적
발명장려 유공단체	○ 기업체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연구기관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기업 - 획기적인 첨단기술의 발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 창출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특허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 - 특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기업 -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기업 -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발명진흥 활동이 많은 기업
	○ 대학교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많은 학교 - 특허관리 전담조직 설치.운영 학교 - 지식재산의 연구 및 교육과 제도발전에 기여한 학교 (연구논문실적,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발명행사 입상 및 연수 실적 등) - 지식재산관련 학과(대학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발명교실 및 발명반 운영학교	- 발명반 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발명인재 양성 및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 학교 - 학생발명전시회 출품 및 입상실적이 우수한 학교 - 지식재산 창출실적이 우수한 학교 - 발명교실 운영.참가 등 학생발명활동 지원 실적이 우수한 학교
	○ 발명유관단체 ○ 기타	- 발명진흥 및 특허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 및 연수, 발명진흥공적 등) -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판로개척 등에 기여한 단체 등

※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분야별 최근 5년간의 공적(2019. 1. 1 ~ 2023. 12. 31)으로 평가함

2. 제한 요건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함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만 해당)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 포상 추천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 수여일 :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포상의 제한

- 1) 단체 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5)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6)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더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신청 절차

○ **발명의 날 유공 포상 신청(추천) 공고**

- 공 고 : 일간지, 누리집(특허청, 발명진흥회),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안내
- 신청분야 : 발명가(개인, 학생, 직무),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
-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2.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추천)
※ 발명가 분야의 경우 올해의 발명왕 신청과 중복신청 가능

<참고> 올해의 발명왕 신청(추천) 공고

- 추천대상 : 신기술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발명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귀감이 되는 자
 -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등 실제 발명가 중에서 선정하며,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 재산센터 등의 장은 후보자 추천 가능
-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2.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추천)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 확인

4. 심사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 신청공고 및 접수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간신문 공고, 우수발명가 등 발굴 	○ 1. 2~2. 2
포상추천심사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 발명특허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15명 내외) ■ 심의내용: 포상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3월 초
결격사유 조회 (경찰청, 산업안전공단, 공정위, 노동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제외 대상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중 혹은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산업재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주, 체납자, 사회적 물의 유발자 등 	○ 3월 중
공적심사위원회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내용 : 훈격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및 정부포상 이하 포상자 결정 * 누리집을 통한 포상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3월 말~ 4월 초
포상대상자 추천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4월 중
차관회의 / 국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사항 검토) 행정안전부에서 결격사항 또는 과거포상경력 등을 재 검토 ■ (안건 상정)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포상자 확정 	○ 4월 중 ~5월 초
정부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9「발명의 날」 유공 포상 수여 (총 80명 내외) 	○ 5월 22일 예정

III. 포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 유의 사항

- 신청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포상추천담당자는 아래 요령을 잘 읽고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신청 누리집 내 발명의 날 유공 포상신청 페이지에 입력·작성(온라인 접수)
※ 신청서 내 기재된 담당자를 통해서만 관련 업무를 진행하므로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바람
- 공적에 대한 오기, 누락 그리고 기재된 공적에 대한 입증자료 미첨부시 공적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접 수

- 신청 접수
 - '24. 1. 2.(화)~2. 2.(금) 18:00까지(접수마감 당일 온라인 신청 접수에 한함)
- 작성 및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의 포상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
 - www.kipa.org → “지원사업” → “국내발명 전시/행사” → “발명의 날 기념식” → “기념식공고” → 발명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안내 공고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발명진흥실
 - 전화 : 02-3459-2794, 2845, 2792 / Email : 519@kipa.org

3. 일러두기

- 다음의 각 대상은 포상기준이 동일. 유사하더라도 포상신청 및 포상심사(평가점수 산정)시 각각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함
 - . 발명가 : 개인 학생(초중고, 대학생), 직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 ※ **대학원생**의 경우 발명가(개인) 분야에 신청
 - . 발명유공자 : 대표 및 임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 . 발명장려유공자 :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 . 발명교육유공자 : 발명교실 및 발명반 교사, 교수, 기타
 - . 발명장려유공단체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및 발명반 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기타
- **발명가(개인)**는 직업,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
 - . 개인발명가 부문의 경우 모든 권리화 실적은 본인 또는 본인이 대표인 기업(단체)이 권리자(출원일 경우 출원인)이어야 하며, 해당 권리의 발명자(디자인의 경우 고안자)로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무발명가인 경우 발명가(직무)로 신청해야 함.**
- **발명가(직무)**는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의한 직무발명(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한 발명가를 말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의 경우, 본인 개인의 발명실적에 대해서는 **발명가(개인)** 부문에 신청 가능하나, 종업원 발명을 포함한 업체 전체의 발명실적에 대해서는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중견기업)** 부문에 신청하여야 함
- 기업체, 연구기관의 임원(대표)이 **발명유공자** 부문에 신청할 경우 기업체, 연구기관 전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당해 **신청자의 재임기간 중 실적에 한함**
- 발명장려유공단체 부문의 경우, 표창을 수여함
 -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발명가의 사업화 실적”이라 함은 당해 발명가의 특허발명이 스스로 또는 타인 (소속업체를 포함)에 의하여 사업화된 실적을 말함
- 기업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특허관리 전담조직이 독립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성격을 가진 소속기업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동일인이 동일공적으로 과거 발명의 날 유공 포상시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이전 포상에 반영된 공적은 제외함
- **공적 인정기간은 포상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공적을 종합 평가함 (예 : 2024년 신청의 경우 '19. 1. 1부터 '23. 12. 31까지)**
- 포상심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나 추가할 부문이 있으면 포상추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함
- 근무(수공)기간은 '발명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포상년도의 당해연도 2월말일(예 : 2024년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하되, 포상 신청자는 **해당 분야별로 아래 예시된 기산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 (근무(수공)기간 산정 증빙서류 제출)**
 - . 발명가 : 본인 명의의 최초 출원일, 발명창작활동 개시일, 기타 발명활동 개시일 등
 - . 발명유공자 : 발명관련 기업 입사일 (창업일; 본인 창업인 경우 상호변경 무관), 본인 명의의 최초 출원일, 기타 발명활동 관련 업무 시작일 등
 - . 발명장려유공자 : 발명 장려 활동 관련 업무 시작일 등
 - . 발명교육유공자 : 현직 최초 재직일, 발명 또는 장려(교육) 활동 개시일 등
 - . 발명장려유공단체 : 발명 장려 및 사업화 지원 활동 개시 시점 등

※ 이공계 전공의 경우 석·박사과정 기간은 공적기간에 포함되며, 군 경력기간은 제외 (단,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는 공적 기간에 포함)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포상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각 부처별 포상업무지침 적용
- 포상신청의 공적내용이 허위일 경우 향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함